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2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 2) 회부일자 : 2026년 1월 22일
- 3) 상정일자
 -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2. 5.)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민정 의원)

1) 제정사유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중장기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를 도입하여 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포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별표는 현행 내용을 유지하되, 삭제로 인한 결번을 해소하기 위해 별표 체계를 정비함.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도입과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마련하여 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복합체육센터, 농어촌 체육센터, 도심지내 소규모 체육센터 등 지역내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 중장기 관리 계획의 미비로 인해 체계적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예측가능한 행정을 통해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전부개정 내용 중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타시군 체육시설 사용료,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